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04
----------	-------

발의연월일 : 2025. 8. 11.

발 의 자 : 강득구 · 김주영 · 김 현
민병덕 · 송재봉 · 양문석
장종태 · 조계원 · 최혁진
허성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죄질에 따른 차등 적용보다는 법정형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되,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죄질과 범죄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독재정권 등을 거치면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행위가 빈번히 자행되었으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해당 범죄에 대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범죄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 사인의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인 행사로 인한 범죄를 국가가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폭력을 자행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의2 중 “사람을 살해한 범죄(중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람을 살해한 범죄(중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 공무원(「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국가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과정에서 범한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3.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범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51조(범인은닉),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5조(증거인멸) 및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의 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u>사람을 살해한 범죄(중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 ----- ----- ----- ---
<u><신 설></u>	1. <u>사람을 살해한 범죄(중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u>
<u><신 설></u>	2. <u>공무원(「행정기본법」 제2조 제2호나목에 따른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국가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과정에서 범한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u>
<u><신 설></u>	3. <u>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u>

	<u>기 위하여 범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51조(범인은닉),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5조(증거인멸) 및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의 죄</u>
--	--